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 공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연공시, 누락·오기 등 재발 방지 안내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 제도 유의사항 안내 -

【관련 국정과제】 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21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 개요 ]

- ▶ (일시·장소) 26. 9. 21.(월) 15: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 (참석대상) 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102개 기업집단/3,538개 소속 회사) 임직원

| 시 간         | 내 용                           |
|-------------|-------------------------------|
| 15:00~15:30 | ○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
| 15:30~16:00 |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
| 16:10~16:40 | ○ 하도급대금 연동제                   |
| 16:40~17:00 | ○ 질의응답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2월에 걸쳐 진행될 2026년 하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하여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동안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FAQ)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자주 질의한 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서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와 더불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행 이후, 공정위는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가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되어 8월 1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정내용과 함께 연동제 이행 절차를 설명하고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1.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질의응답서(FAQ)

|       |                    |     |     |                    |
|-------|--------------------|-----|-----|--------------------|
| 담당 부서 | 기업협력정책관<br>기업거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송명현 (044-200-4945) |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웅 (044-200-4958) |
|       |                    |     | 조사관 | 조희정 (044-200-4955) |